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의료조합에도 적용함으로써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등).

II. 검토의견

○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 위임(안 제48조의2제1항제4호)

안 제48조의2제1항제4호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보건·의료조합이 경영공시하여야 하는 사항(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외에 경영공시할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고,¹⁾ 여기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해당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²⁾

그러나, 안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더라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해당 규정 위반은 안 제88조제3항제5호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성요건이 되므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점에서, 유사 입법례³⁾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1)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마515 결정례;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가1 결정례 등

3)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③ (생략)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회의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 ④ (생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

있도록 “그 밖에 제45조제1항4)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체화하는 수정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함.

<안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 대한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제48조의2(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보건·의료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건·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제48조의2(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보건·의료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건·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정한다)
9. 정관·사채원부, 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13.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15.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 ~ ④ (생략)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u>대한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u> 1. ~ 3. (생략) <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u> ② ~ ④ (생략)	<u>대한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u> 1. ~ 3. (원안과 같음) 4. 그 밖에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 ④ (원안과 같음)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